

지문날인 거부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

일시 : 1999. 7. 19.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지문날인 거부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

일시 : 1999. 7. 19.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식 순

■ 제 1부 : 선언자 대회

- 인사말
-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지문날인 거부 사례보고
- 연설
- 선언문 낭독

■ 제 2부 : 지문날인 거부운동 조직화를 위한 토론

자료집 차례

경과보고	4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문	5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자 명단	6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문	7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
신체의 권리를 찾는 문화선언	14
나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18
지문날인 거부 10문10답	22

지문날인 거부 운동 진행 경과

- 1999. 4. 26.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폐지와 플라스틱 주민증 발급을 끝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 1999. 5. 26.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성명서 발표
- 1999. 5. 27.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및 전자지문 채취 시작
- 1999. 6. 15.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지문거부 운동 진행 논의
- 1999. 7. 1. 지문날인 거부 1차 IS1인 선언 발표
- 1999. 7. 15. 김종필 총리, 한자병기 문제로 주민증 경신발급 3-7개월 연기 발표.
-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
-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 발표
- 1999. 7. 26. 광주전남지역 지문날인 거부 선언(예정)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문

1968년은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혼란의 와중에 변변한 검토도 없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30년동안 우리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면서, 그리고 지문이 찍혀 있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면서, 권력에 대한 복종을 배워온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날인을 강제하였습니다.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도거부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자신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면서도 말입니다. 일본정부의 지문날인강제조치에 대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을 뿐입니다. 즉,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제도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의 서식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문날인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강제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의 유산이 21세기를 180일 앞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은 커녕 정부는 무려 4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 때 채취한 지문은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여 전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경찰 등 공안기관이 관리하여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반대합니다. 지문날인거부운동은 단순히 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1999년 7월 1일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자 일동

<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자 >

강기탁(변호사)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강동진(치과의사) 강영호(의사) 강인성(청년진보당 호남광역위원장) 강지연(임상병리사)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고한석(의사) 광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권미란(약사)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김기곤(성글라라봉쇄수녀원 원장신부) 김기덕(변호사) 김기락(의사) 김기중(변호사) 김도형(변호사) 김보연(임상병리사) 김봉술(임실군 오수성당 주임신부)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김석수(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선민(의사) 김선수(변호사) 김승환(전북대 법학과 교수) 김시창(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김연태(군산대학교 노조위원장) 김영민(치과의사) 김용익(의사) 김유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김유호(의사)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은영(교사) 김은현(간호사) 김의수(전북대 철학과 교수) 김이수(의사) 김정숙(민가협 운영위원)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정희(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종구(의사) 김지영(의사) 김진(변호사)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화(전주 동산동성당 신부) 김창엽(의사) 김학철(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형태(변호사) 나동규(의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규선(민가협 총무)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도계형(변호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리수현(익산 용안성당 주임신부) 문규현(전주 서학동성당 주임신부) 문정현(익산 작은자매의집 원장신부) 민혜경(약사)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박군배(약사)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성완(정치개혁시민연대 간사) 박용길(민가협 공동의장) 박태훈(의사) 박현자(정치개혁시민연대 간사)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배기영(의사) 백남운(전주효자동교회 목사) 백재중(의사) 백한주(의사) 서경순(민가협 운영위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홍관(의사) 석미화(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소수용(김제만민교회 목사)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소연(민가협 간사) 송초아(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신상도(의사) 신재기(의사) 안봉환(정주 중앙성당 보좌신부) 양승호(전북대 철학과 교수) 양지용(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염경석(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오미경(간호사) 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오주환(의사) 우석균(의사) 유영진(의사) 유점열(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교수) 유혜정(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윤석준(의사) 윤성민(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윤혜경(민가협 공동의장) 이경우(변호사) 이기욱(변호사) 이동욱(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이미금(치과의사) 이부영(교사) 이상희(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이송준(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이숙건(임상병리사) 이승미(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이유허(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이윤주(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이정수(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종규(의사) 이주한(의사) 이종호(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지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이찬구(한의사)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임상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총장) 임은성(간호사)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권한대행)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장원기(의사) 장창원(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정경희(임상병리사) 정병관(치과의사) 정일용(의사) 조광희(변호사) 조대환(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간사) 조순덕(민가협 운영위원) 조용환(변호사) 조정진(의사) 조홍준(의사) 주영수(의사) 지철(의사)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선미(변호사) 채은아(민가협 간사)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최성권(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최민(서울장애인연맹 대표) 최용준(의사)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최인순(약사) 최종수(전북 김제군 수류성당 주임신부) 최혁(청년진보당 대표) 하성호(의사)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한상렬(전주고백교회 목사) 홍복자(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홍춘택(약사)

총 151명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선언문

우리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사회인사 151인의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지지하며, 지문날인 거부선언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지적되어 왔듯이 지문강제날인은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로 찍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찍으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아이들이 커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박하려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가 제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면서도, 정작 전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했던 사실에서 지난 30년동안 지문날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에 저항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한다.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지문을 모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전 국민의 지문을 기초로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은 곧 국가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범죄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는 점도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문날인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있다.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한 지문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민생치안 수준은 형편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와 시신확인에서의 필요성 등 효율성의 논리로서 지문강제날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지문강제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조만간 등장할 유전자정보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시신의 신원확인 필요하다고 하여 전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지문날인을 인정한다면 유전자정보원의 설치를 반대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좀 더 발전하여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지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도한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2차 선언자들은 이같은 이유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정부에 대해 지문날인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999. 7. 19.

2차 선언자 일동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변호사 김기중

1. 문제제기

그동안 주민등록제도를 직접 다루는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었다. 지난 1996. 4.경부터 김영삼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자주민카드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¹⁾을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록제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자주민카드를 막아내는 것이 발동의 불이었으므로, 전자주민카드의 전제인 주민등록증과 등록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이나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운동의 주체들 사이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제대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한 수준의 반대운동을 함께 벌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면화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하게 되면 쟁점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는 반대론이 우세하였고, 실제로 반대운동과정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뿌리는 주민등록제이다. 최근에 일부에서 전자감시의 우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뿌리도 주민등록제이다. 주민등록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근대와 현대국가의 특질을 모두 갖고 양자를 넘나드는 우리 국가의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 부분에 관하여 1999년 2월 말경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발표문은 지난 2월의 발표를 요약, 정리하면서, 지문날인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³⁾.

1)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성과와 정보지배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1997년도 인권보고서(제12집), 변호사협회를 참조

2) 다만, 1997. 6. 16.에 열린 변호사협회 주최의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측면의 분석이 시도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1997년 7월호 참조.

2.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민법관계의 규율이 주요한 목적이다. 주거등록제도는 행정적 통제와 복지수급의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목적의 제도이다. 양자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원칙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의 하나인데, 단순히 '주거'만의 등록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목적에 의해서 도입된 주민등록증⁴⁾과 전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서로 중복되지 않은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번호로 불리는 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정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는 현대정보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3. 주민등록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관계의 등록외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거주관계와 동거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은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관리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전의 주소, 병역사항 등을 비롯하여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직업훈련관련사항, 학령아동이 있을 경우 보호자성명 및 취학년도 및 졸업년도, 학력, 직업 등을 기재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호주, 개인별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기재한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1개 항목에 달하며, 이 정보중 78개 항목(주민등록번호, 이름,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주소, 본적, 학력, 호주,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사항 등)은 다시 주민등록전산망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3) 자세한 것은 김기중,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발표문 참조

4) 주민등록증은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최초 도입되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1970. 1. 1. 제2차 개정때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발급을 시작하였다.

와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국민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뚝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이 편리함은 자신을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큰 대가(특히 선량한(?) 국가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대가)로 얻은 것이다. 주민등록전산망이 없었다면, 아마 이한영씨는 피살되지 않았을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번호발급지역을 표시하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데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데, 심지어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지 못하면 큰 곤란을 겪게 될 정도로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출생일은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출생지역을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그 사람의 성별을 구별해 낼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존재는 곧 어떤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권리능력이 추정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통신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신상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그 소유자로 행세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다.

5. 주민등록증과 지문

모든 국민은 17세가 되는 날에 국가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발급이 강제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국가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은 곧 불순분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찰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응하지 않으면 곤란을 겪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발급기간내에 직접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고,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평면지문과 함께 회전지문도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지문전부를 찍기 위해서 손가락을 180도 정도 돌려서 찍는 지문을 말하는데,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손가락을 붙잡고 지문용지 위를 돌려야만 한다. 일본에서는 이 회전지문방식이 외국인에게 심각한 불쾌

감과 혐오감을 준다고 하여 1985년 7월부터 평면지문만을 찍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증에 수록한 내용에 관하여는 그동안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1997년 12월 개정법률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고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포기하도록 한 1999년 4월의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서 수록정보규정을 이어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한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문날인에 관한 사항이 주민등록증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되게 되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때 채취된 열 손가락의 지문은 모두 경찰청(감식과)으로 집중, 수집된다. 경찰청은 전 국민의 지문을 상시 검색하여 범죄자 수배에 활용한다. 한겨레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전 국민에게 열자릿수의 지문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다.

6. 외국의 제도

전 국민이 우리와 같은 식으로 번호와 신분증으로, 거주지와 그 이동상황의 등록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찾지 못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고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는 나라도 북구 제국외에는 별로 없다. 우리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독일과 일본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독일은 신분법에 의하여 신분등록을, 각 주의 책임아래 주거등록을, 신분증명법에 의하여 신분증제도를 두고 있다. 신분등록은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므로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보호된다. 주거등록은 지방정부 관장아래 그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분증도 강제발급하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가 신분증발급사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인적사항의 자동추출과 자동저장을 위해 신분증 기록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말하자면 독일도 우리처럼 신분등록, 주거등록, 신분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세 가지 제도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특히 신분증의 경우 문자 그대로 각 개인의 신분증 역할만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분증 기록정보의 타 목적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분증과 개인식별번호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주거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가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도 않는다.

7.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검토

외국의 제도와 구분되는 우리 주민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제도가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동된다는 점이다. 주거등록과 전·국민 고유번호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영국의 통계학자 Philip Redferm이 상정한 가장 이상적인 등록제도는 주소의 갱신체계와 중앙등록부 및 이를 연결하는 개인식별번호를 꼽고 있다. 이 요소를 만족하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제국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 Philip Redferm이 주장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외에 각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식별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국가신분증 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는 다시 신분등록제도인 호적제도와도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민등록제도의 면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것이라 하겠다.

결국 우리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유기적 조직으로 묶어내는 기본 기능한다. 이 점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불평등의 뿌리는 호주제도와 혈통주의라 할 수 있으며, 국가를 전지전능하게 만들고 그에 의하여 국민을 복종시키는 국가정보수집체계의 뿌리는 주민등록제도이다. 최근 '시민권력'이라고 하며 언론이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부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강력한데, 주민등록제도는 그러한 권력집중의 기반시설로 기능한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나아가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8.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와 우리 지문날인제도

가.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55년경부터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1년이상 체류할 목적의 16세 이상 외국인)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때 지문(왼손 집게손가락)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문은 등록증(본인소지), 등록부(등록청 보관), 지문원지(법무성보관)에 날인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문을 정확하게 찍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손가락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통 담당 직원이 대상자의 손가락을 잡고 손가락을 180도 정도 돌리면서 지문을

5)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글 참조. 법무부,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 법무자료 제62집, 1985; 최신의, 「일본, 외국인등록법과 국적조항」, 서울대 법학연구, 1993. 11.; 박병윤, 「지문폐지운동과 재일한국인의 장래」, 해외동포, 1985. 3.; 内野正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일본국헌법판단」, 교포정책자료, 1985. 3. 등

채취한다.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대해 1980년대 초반부터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거부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운동은 1983년경에 시작되어 1983년 11월 동경변호사회가 참여한 지문거부소송 전국연락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1984, 85년에 최고조에 달하여 1985년 말경에 일본인을 포함하여 180여만명이 지문날인철폐에 서명하였다. 지문날인폐지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외국인은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분사항이 일본국민만큼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가족이 적다거나 밀착도가 낮기 때문에 외국인을 특정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의 법원도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의 부정등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범죄수사에는 이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판단하였다. 지문날인거부운동측의 주장은 이 제도는 외국인을 우범자로 보는 것으로 헌법상 신체검사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신체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프라이버시의 권리),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문날인은 결국 범죄수사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거부운동측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코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대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문날인거부운동에는 민단은 물론이고 조총련과 일본내 학자, 변호사 등이 광범위하게 결합한 대규모의 운동이었는데, 이 때문에 동경대의 한 교수는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오로지 원초적인 인간의 권리, 순수한 인간적 염원 구현만이 높이 외쳐진 인간회복 내지 인권회복의 운동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⁶⁾.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일본은 외국인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외국인 지문날인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자들은 그 지문이 경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경찰이 날인된 외국인의 지문을 사용했다는 사례도 꽤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거주관계와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취한 지문정보를 결코 경찰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조차 없는 지문을, 그것도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할 뿐더러, 그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경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지는 주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정도이니, "지문날인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6) 특별대담, "지문날인제는 폐지돼야 한다", 신동아, 1986년 10월호

신체의 권리를 찾는 문화선언

—야만적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반대하며

젊은 비평가 고 길 섯 (PP640@chollian.net)

1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들은 자본주의 및 근대적 규율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혹사당하고 있다. 임금노예의 노동들, 극도로 오염된 환경들, 언제당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와 폭력들, 성적 상품화, 사회체제와 권력에 길들여지기, 인종주의적 편견, 신체적 감성들의 억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외부적 힘들이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며 우리들 스스로 그 멍에 빠져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생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생명의 집'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생태적 순환은 쾌활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의 절대적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들은 생태적 순환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온 위기에 놓여 있다. 식탁에서는 농약에 찌든 야채들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권위에 복종하여 몸을 내맡겨야 하고, 도심에서는 대기오염과 경직화된 공간이 숨통을 옥편다.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고 사회의 생태가 왜곡되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 신체들의 생명활동이 고통받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생성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체들은 스스로를 생성해내기보다 타자의 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들의 신체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자본논리, 가부장제, 성(sexuality), 관료주의, 인종주의의 권력 등에 의해 식민화되면서 스스로 생성하는 힘을 포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심지어는 합리주의 따위의 미명아래 그 권력들의 횡포를 옹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욕망의 집'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생성의 힘이자 신체의 자기조직화를 추동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왜곡되거나 탈취당해 왔다. 신체가 상품화되면서 신체의 자기조직적 능력이 자본의 욕망에 포섭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원초적 욕망들도 말소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욕망은 개개인들의 신체성을 철저히 관리, 통제, 감시, 처벌하는 체제를 구축해왔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그것의 가장 근대적인 표지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한 사람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여 비대화하고 권력화하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삼

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언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표현의 집'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신체는 제각기 고유한 문체들로 독특한 표현들을 즐기고 소통하는, 개성적인 언어이다. 그것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욕망한다. 그러므로 키가 크건 작건, 얼굴이 이쁘건 이쁘지 않건, 곱상하게 생겼건 '흉하게' 생겼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각자의 신체들에는 각자의 언어와 인격이 존재한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건 남루한 옷을 입었건, '교양있는 말'을 하건 '천박한' 말을 하건, 돈이 있어 보이건 없어보이건, 잘나건 못나건, 각자의 신체들에는 각자의 문화와 삶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표현된 존재들에는 사회적-개인적 주름들이 스며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신체적 언어와 표현의 이미지들을 인종주의적이며 가식적인 편견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불품없어하고 따돌리는 태도에 길들여져 있다. 또한 우리의 신체들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 아직도 권위주의로 경직되고 제도화된 틀로 가로막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사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의미의 집'이기 때문이다. 신체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고 욕망하는 어떤 의미들의 생산자로 행동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체들은 각자 혹은 집단의 주제적 의미화와 관련된 정체성(identity)들을 형성한다. 자기정체성에의 인식은 특정한 관계들에서의 자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능동적 힘을 생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억압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맞서는 해방의 조건들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실천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신체를 신체 그 자체로 인식할 뿐이지 의미의 정체성들이 접속하고 충돌하는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신체들은 자유스러워 보이고 자연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되고 배치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의 고유한 형질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체는 '정보의 집'이기 때문이다.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관상, 손금, 지문, IQ, EQ, 바이오리듬, 유전자, 피부색, 시력, 외모, 신장, 필체, 말투 등에서 자신의 운명이나 적성, 성격, 이미지, 고유성, 차이성 등을 재미삼아 혹은 진지하게 따져본다. 이러한 신체의 정보들은 생물학적 특성이기도 하고 문화환경들에 의해 특이화되기도 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정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정보화되어 관리, 통제, 감시당하거나 자본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거의

무감각하다. 가령 196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1인 1번호 원칙으로 철저히 고유번호로 부여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화된 제2의 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문은 범법자에 제한에서 받고 있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지문을 찍어서 국가에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예비 범죄자란 말인가?



체 역할을 하면서 관리, 통제, 감시의 권력장치로 기능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왔다. 신체는 몸뚱아리 그 자체만이 아니다. 신체가 표현하거나 접속하는 모든 것들, 가령 신체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신체가 거처하는 공간들도 그 신체의 부분들이다. 그러면서 생성과 욕망의 흐름들에 따라 끊임 없이 신체를 변화시키거나 확장한다. 따라서 능동적 신체는 가령 자연을 착취의 수단으로 삼거나 기술문명으로부터 소외되기보다 그것들과의 생태적 과정에서 마음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눈다. 그리고 신체는 단지 본성적이거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신체는 사회, 사회적 장치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신체성을 갖는다. 신체는 '관계의 집'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체를 파시즘적 부속품이거나 개인주의적 생존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길들여왔다.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지문날인을 국가권력의 음모적 장치로 비난하기보다 인구관리와 행정편의 및 범죄예방,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합리적 도구로 승인하는 것도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훈육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2

신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적, 지식적, 이데올로기적 충돌의 장소다. 우리의 신체는 국가권력과 자본논리에 두 계기로서 호출된다. 하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이다. 전자는 '국민'이라는 이름에서이고 후자는 '인구'라는 이름에서이다. 국민의 범주와 인구의 개념은 근대적 지배체제의 논리이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국가기구에 등록, 관리되고 훈육받으며 감시, 통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왔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은 지배체제의 정치와 권력이 불순하게 개입해 온 음모적 장치들이다. 그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는 출생신고시 동/면사무소의 행정기구에 주민등록할 뿐인데도, 놀랍게도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무지를 뒤로 하고, 그 모든 정보들이 경찰기구나 정보기구에 모조리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이

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행정기구에 정보화되어있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경찰기구나 정보기구에 버젓이 정보화되어 있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생각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찰기구에 입력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조회하는 것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1960년대 제정된 것이지만 그 계보를 추적해보면 일제시대의 기류법(寄留法)을 뜯어고친 것으로 청산해야 할 일체의 잔재이다.

최근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갱신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의 은폐된 형태이자 언제든 '전자주민카드'로 재갱신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날인이다.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있어 온 일이다. 그러므로 별 문제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거리가 아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공모해 온 데에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처음 부여되던 1960년대에 관료주의에 짓눌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신체들의 고유무늬인 수천만개의 지문들이 국가권력에 인질로 잡혀 왔다. 이것은 명백히 신체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인권의 침해이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인간적 사용을 욕보이게 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3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권력기구에도 포착되지 않을 우리의 신체의 권리를 재발견하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지문날인은 국가권력에 우리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 행위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지문이 감시사회의 정치적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체의 자기조직적 원초성을 고유무늬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파시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는 존재-생명-생성-욕망-표현-의미-정보-관계...의 집이다. 이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면서도 개인적 자율성의 근거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체는 사회적 공생체로서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원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개인주체의 구성체로서 신체적 권리가 마땅히 옹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감시체제들을 무너뜨리고 해방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신체적 역능화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것은 저항의 의미를 넘어 개개인들의 신체의 권리를 재발견하고 그 신체적 역능화에 대해 재사고할 것을 문제제기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지문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성의 위기 및 신체의 권리를 둘러싼 모든 논의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이것을 나는 국가권력의 야만적 행위에의 저항이자 신체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문화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나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지문날인 거부 사례

목욕탕에 갔다오면서 생긴 일 (대학생)

석달전 목욕탕에 갔다오면서 경찰차를 만났다.
 주민등록증을 보잔다. 체육복을 입은 나에게...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니, 제복입었다고 했다. 그거면 된다고 한다. 장난 하나!!! 그거 남대문가면 쉽게 산다고 했다. 마지못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다. 티격태격하다가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좀 화가 난듯하다.
 그런데 이자식이 손을 내밀어보라고 한다. 그랬더니 내손을 잡는다.

웬일? 혹시 호모...!
 그러나, 무전기를 꺼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든다. 주민등록번호, 외상문(?) 잘 기억나지 않음, 엄지, 검지, 그리고 숫자들을 연달아 이야기한다.
 저쪽에서 이야기해주니까 가라고 한다.
 음!!! 지문의 모양이 개인마다 번호로 저장되어있다!!!
 그날 나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한국 경찰이 바보라는 사실도 알았다.
 무단 불법 검문, 국민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화된 지문모양 -- 이걸 가지고 범죄 검거율 99%를 달성못한다는 것은 바보다!!!
 어! 이 이야기가 아니었는 데... 지문날인을 하지않을 것이다.
 열손가락에 이상한 잉크를 묻히지 않을 것이다.
 혹시 지문 없어지게 하는 기계없나? 그 기계를 대책위에서 구입해서 모든 국민의 지문을 없애면...!!!

[경험] ILO에서, 동사무소에서..(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제작년 ILO로 교육출장을 갔을 때 일이다.

약 15개국 정도(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각 나라 참가자들이 바글바글 왁자지껄 떠들고 놀다가 한 사람이 물었다.

- 민주노총에서 그 일을 너 혼자 한다고?
- = 응.
- 우와..정말? 네가 몇살인데?
- = 27살(한국 나이로 당시 29살이었음)
- 말도 안돼. 너무 어리다.
- (그 말을 한 헝가리 노총 사무차장은 49살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별 생각없이 내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다.

- = 무슨 소리야. 자 봐. 69년생이잖아. (주민등록번호를 가르키며..)
- 그게 뭔데? 그 번호가 너야?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 = 응. 이 번호가 나야.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내가 태어난 년도야.
- 그 번호가 너라구? 넌 그 번호를 외울 수 있어?

그러면서 여권의 번호를 가리면서 나보고 외워보란다.

- = 응. 6908.....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워.
- (주민등록번호를 영어로 할려니까 그게 더 헷갈린다)
- 니네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번호가 붙여져있단 말야? 그럼 너를 부를 때 이 번호로 부르기도 하나?
- = 응. 그럴때도 있어. 이 번호가 나를 의미하니까.
- 푸하하..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이구나! (프랑스 선생)

다들 맞아맞어~ 하면서 마구 웃어댄다.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 = 니 네는 이런 번호 없니?
- 여권번호만 있을뿐이지.. 사람한테 번호는 안 붙여.
- = 그럼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그 번호도 바뀌는 거야?
- 응.
- = 그렇구나..

나중에 자리가 파하고 나서.. 남아공쪽 대표가 살짝와서는
 - 실은 우리나라도 그 번호 있어.

그러면서 여권에서 자기네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면서 하는 설명이..

예전에 아파트헤이트 때에는 제일 앞자리 숫자에 1,2,3 등이 붙어있어서 백인, 흑인, 유색인 등으로 숫자가 나뉘어 있었다고 말해준다. 아마 우리 뒷자리의 1,2로 남녀 구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선 남녀, 나이, 탄생지가 중요한 나라이고, 그 나라에선 인종이 중요했으니 그런 식으로 분류했으리라 추측해본다.

그러다가 인종차별정책이 없어진후 단지 일련번호로 바뀌었다.

그러고 헝가리에서 온 대표는

- 우리나라에도 국민한테 그런 번호를 국가에서 붙여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어. 하지만 니네처럼 그렇게 쓰이지는 않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거기서 지문날인 이야기까지는 사실 쪽팔려서 꺼내지도 못했다.

버스 지나고 나서 뒤늦은 반성.. (과학기술자)

이런 부끄럽습니다. 사실 전 주민등록갱신을 했거든요.

뭐든 나라가 시키는건 잘안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저의 사례를 들면 노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일없이 빈둥거리다 친구집에 전화 했더니 동사무소 주민등록 갱신하러 갔다더군요.

참 나도 해야지 하는 맘에 동사무소에 가니 제법 많은 사람이 있더군요.

그 와중에 빨리 하려고 뛰어서 줄서는 우까지 범했습니다.

당근 아무 준비 안하고 갔던터라(사실 예전 주민등록증도 잃어버린지 3년되는데 신고 안했습니다.) 지문 찍자는걸 그냥 따랐습니다. 좌우 엄지 손가락을 찍더군요 (열손가락 다찍지는 않았습다. 그건 17때 다했으니깐요)

다른사람은 준비해온 사진을 제출해서 스캐닝을 하는데, 전 그냥갓기뻐 사진까지 찍어주더군요. 그런데, 사진찍으려고 앉으니까. 그때부터 굴욕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앞에 번호판들고 찍는 것처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등록한 느낌이었습니다.

자국민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면서 제일동포 지문날인 반대할 명분 없으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일본의 처사에 침묵해 왔나봅니다.

"똥물은 개지만 최소한 같이 똥물은 개 나무라지는 않는다 " 는 정도의 윤리의식이 우리 정

부의 수준이라고 하면 과할까요. 그래도 똥물은 개가 똥물은 개 나무란것보단 덜 위선적이라고 기뻐해야 합니까.

버스 지나가고 뒤늦게 반성합니다.

이미 등록 한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절한 절규)

주민등록증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세 고교생)

저는 얼마뒤에(약 6개월 뒤)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정당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문날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문날인은 '당연히'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면 하네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되는 것은 만 17세가 되어도 주민등록증을 정당한(기준이 애매해요) 이유없이 만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장이 무척 난처해요.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지 않는데(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당하는 것이 싫거든요, 지문 날인하는 것도 기분나쁘고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해결방안이 있나요?

해결방안이 없다면 시민단체를 통해 헌법소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과 주민등록증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시절 만들어진 조항으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것 같거든요. 시민단체를 통해 헌법소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길 수 있을것 같은데.....

해결방안에 대해서(해결방안이 없더라도) 답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지 싫어하는 고등학생이

☛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 : <http://fprint.jinbo.net>

지문날인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 지문날인제도 10문 10답 -

Q1 :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1 : 1968년은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혼란의 와중에 변변한 검토도 없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 지난 92년 일본에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문제로 외교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그 후 재일한국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A2 : 92년 일본정부에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을 받겠다하여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94년 일본정부는 2차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하여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범죄자외에 어떠한 사람도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 우리나라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A3 : 국가차원에서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자에 제한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고, 과거 일본과 같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는 소위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 지문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분확인에 필요하다던데...

A4 :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첫째, 범죄자 색출과 둘째,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명분도 실효도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범죄자 검거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문을 대조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받는 것은 명분도 효과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유

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문을 통한 시신의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대체 다른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역시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Q5 : 지문날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A5 :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으로 '지문'을 수록한다고 하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0년동안 지문날인제도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가 논란이 되면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주민등록법에 삽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Q6 : 지문날인과 함께 주민등록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A6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민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민들의 거소 파악을 위해서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강제등록이지만 외국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시에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양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소와 성명 등 몇가지 간단한 사항만을 기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예비군 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직업 등 141개의 항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민 고유번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등 개인의 핵심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받은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Q7 : 정부에서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A7 : 정부에서 전자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은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고도화된 주민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야 여겨집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지털로 채취된 지문정보를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바로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지문은 개인마다 특징이 모두 달라서 홍채(눈의 검은 부분), 치아구조와 함께 인증시스템(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지문을 채취해 놓으면 지문감식기를 통해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는 불법적인 불법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지만, 지문이 디지털로 되면 지문감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모든게 지문인식기를 통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문에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에서 '주민등록증 항시소지 의무'(항상 가지고 다녀야할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할 필요없이 지문인식기에 손을 갖다 대면 되니까요.

따라서 이번 전자 지문의 채취는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8 : 경찰에서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8 :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내 경찰청에서는 조희 목적으로 특수 전과자에 한하여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무지 즉,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지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 지문 채취가 바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전자지문채취는 특수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9 : 플라스틱 주민증이 전자주민카드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9 :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바로 전자주민카드 수록정보의 통합과 중앙집중적인 발급 시스템에 있는데, 이번 새 주민증 발급도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이번 주민등록증 발급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IC칩(전자칩)만 빠져있을뿐 모든 장비들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IC칩(전자칩) 대신에 전자지문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 지문 채취로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전자지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에도 지문감식기에 손을 대고 들어가야 하고, 만약 금융망이나 다른 정보망과 연결되면 전자주민카드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지문이 바로 현금카드이자, 신용카드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새로운 플라스틱 주민증은 주민증 자체의 수록내용이 조금 축소되었을뿐, 전자주민카드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Q10 : 지문날인 거부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 우선,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가지 않거나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됩니다. 지문날인 거부는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선언을 해 주십시오. 선언양식은 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자세히), 선언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 행정처벌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등록법 제21조의 3 제2항은 만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가 되어 신규발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일제 경신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문날인 거부 선언방법

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자세히), 선언내용을 적어서,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을 합니다.

■ 각 통신망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선언 하거나,
(참세상: go 지문거부, 나무누라: go acro, 천리안: go forum, 하이텔: go newconf)

■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 (<http://fprint.jinbo.net>) 서명게시판,

■ 인터넷 메일주소 fprint@jinbo.net로 보내거나,

■ 선언 양식에 맞게 글을 써서 우편 또는 fax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43-7 원빌딩 3층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번지 2층

fax 번호 : 796-8004, 741-5364, 778-4006

* 공개선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메일이나 우편 또는 fax를 이용.

지문거부 운동 후원금 모금

※ 지문날인 거부 선언 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은행 : 167-07-123558 홍석만

▶ 국민은행 : 812-01-0134-240 홍석만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열어갈 밑거름이 됩니다.

보도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제 목 "경찰의 지문전산화 규탄" 및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 보도 요청 건
날 짜 99. 7. 19
담 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749-9004),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778-4001)
분 량 총 3매 (표지포함)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7월 1일 강제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151인의 지문날인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찰에서 이미 지난 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5년생 이하 남성 800만명과 여성 370만명 등 도합 1170만명의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전산화시켰다는 오늘자 일간지 보도를 접하면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첫째, 지난 30년동안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지난 4월 주민등록법 개정 당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감안해 주민등록법에 '지문' 수록을 명기했다 하더라도 30년동안 채취되어 온 지문이 법률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더구나 이러한 지문을 경찰에 넘겨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처이다. 셋째,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 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10년 가까이 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찰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진상 공개와 책임자 처벌 및 지문 전산화 작업 중단,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문날인거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법률적인 대응 및 새 주민증 수령을 거부하는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한편,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19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

을 발표합니다.

또한, 최영도(민변회장),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혜숙(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회장), 조옥중(자유성당 신부), 박천웅(목사), 이환재(전국노동단체연합 의장), 조희주(전교조 서울지부장), 정은교(21C 진보교육연구소) 등 1500여명의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5.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여연대/청년진보당인권위/YMCA

정부와 경찰의 불법적 지문 전산화 작업을 규탄한다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7월 19일자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지난 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5년생 이하 남성 800만명과 여성 370만명 등 도합 1170만명의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전산화시켰다고 한다. 또한, 제보에 의하면 지난 5월 대학가 시위 때에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전자지문감식기를 역이나 고속터미널, 대학가 주변에 가지고 나와서 지문을 전자감식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1차 지문날인 거부 선언을 필두로 시작된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과정에서 전국민 강제지문채취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문의 전산화는 전자지문감식기의 도입을 필연적으로 야기하여 전국민에 대한 감시통제와 사생활 침해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이번 보도와 제보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의 전산화 작업을 10년 가까이 진행해 왔으며, 경찰이 전자지문감식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정부와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한다. 첫째, 지난 30년동안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지난 4월 주민등록법 개정 당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감안해 주민등록법에 '지문' 수록을 명기했다 하더라도 30년동안 채취되어 온 지문이 법률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더구나 이러한 지문을 경찰에 넘겨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셋째,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 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10년 가까이 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찰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불법적인 지문 전산화를 진행한 경찰과 행자부 관계자를 처벌하라.

둘째, 지문 전산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폐기하고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

만약 정부가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대응과 새 주민증 수령을 거부하는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을 국민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총 1,453 명

<사회단체·정당>

강윤숙 강인석 강인성 강재환 고상만 고은정 고재성 고제열 기명문 김광백 김남균 김명이
김무균 김미석 김민정 김범석 김선미 김성진 김양례 김양희 김영기 김영지 김영창 김은주
김인철 김재광 김정수 김준수 김지현 김창주 김태정 김형욱 김혜경 김홍렬 남교용 남병희
남우희 류준희 문효진 민수범 박미숙 박병선 박세중 박승환 박연진 박용덕 박주영 박준선
박철수 박학룡 박희택 배정란 배현정 백인성 서상덕 석창원 설정은 선택수 송덕호 송미영
송영숙 송영진 송원희 송유나 신영수 안규정 안종삼 양부현 엄근용 엄규홍 오경순 오명옥
오순영 오은정 오창익 오희옥 우종우 유희정 윤철희 윤혜진 이광희 이금연 이병석 이소진
이승현 이옥분 이은영 이재훈 이정호 이종호 이종희 이창근 이창수 이철호 이현재 이현대
이혜숙 이화숙 이효신 인미숙 임송라 임수진 임승원 임필수 장경주 장명철 장윤정 장인숙
전 진 전미화 전형재 정세환 정용석 정유석 정은경 정은교 정은희 정종권 정종숙 정종인
정진우 정진욱 정필교 정홍조 정희진 조규식 조근아 조대환 조정래 조희주 천보선 최영애
최 혁 최선영 최윤경최이숙 최준석 한상학 한은희 함영림 허용만 홍석만

<의료계>

김선빈 김정연 박병현 박형근 배정란 서소영 소병학 송관욱 송홍석 안중호 이진석 정통령
최중재

<학 계>

김상조 김서중 김성구 문진영 박상환 백창재 송주명 이상영 조석근

<변호사>

김승교 심재환 안중민 윤종현 이덕우 정덕진 조성래 최영도

<종교계>

●개신교

강명진 강승태 강우경 강우경 강은숙 고동원 고성균 고유진 고현영 권오규 금주섭 기춘호
 길병구 김강수 김경숙 김동식 김동찬 김명배 김명찬 김상목 김상수 김석봉 김성일 김수택
 김연걸 김영균 김영락 김유미 김유현 김정우 김종언 김준현 김지영 김지원 김철훈 김태현
 김택조 김형수 김혜란 김혜숙 김 훈 남영식 노경신 노종남 류금주 류지승 모규만 문연상
 문재화 민은영 박동식 박병태 박수진 박영국 박은혜 박진석 박진석 박진용 박천용 박충성
 박후임 배은미 백광흠 백성훈 백옥현 변혜숙 서명철 서정호 성강수 성명철 손연화 손은정
 손은하 손은희 송유성 송준서 신미경 신승원 신은주 신종필 신현정 신현철 안광덕 안구선
 안기성 안미현 안성준 안순호 안지성 양재현 양철동 오동성 오상열 오상열 오석희 오성식
 오연미 오재현 오재현 우동윤 원인섭 유승기 유영기 유재무 유해근 윤강수 윤석호 윤순미
 윤영도 이경문 이교린 이근복 이대섭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리노 이만희 이미용 이미화
 이병수 이상성 이상훈 이영철 이창현 이철용 이하준 이혜순 이희성 이희준 임광빈 장병기
 장상윤 장원기 장창원 전병미 전영미 정진희 정찬환 정태효 조수국 조영민 조영식 조용희
 조용희 조진성 조하무 주장준 지승룡 진방주 진희근 차정규 최대석 최수철 최윤덕 최은호
 최진영 최현장 한명석 한윤희 한은교 함덕신 홍만조 홍용철 홍원숙 홍은혜 황남덕

●천주교

강명구 강성호 권순호 김병희 김시몬 김형수 오상수 오정선 정식수

— 지역별 —

<서울>

강국주 강길학 강석호 강영훈 강인성 강종철 강주일 강준열 강태선 강홍구 고범철 고유미
 고지훈 고희수 권영근 권정희 김강훈 김규환 김기현 김대식 김대진 김동윤 김미숙 김민화
 김성완 김수한 김순옥 김순주 김영식 김용석 김원호 김제정 김종철 김주영 김준목 김준현
 김진철 김철호 김철호 김태현 김태형 김태훈 김학원 김현영 김형수 김형식 김형욱 김희정
 노동규 류법선 류투권 문설희 문은실 박동규 박두환 박미혜 박병수 박상조 박성준 박세용
 박승근 박신정 박장근 박지현 박진현 박채수 배병화 배윤일 백성욱 서동렬 서병철 서복경
 서영주 선지현 선춘호 성재민 손경완 손동후 손영상 송해구 신동진 신원상 신재화 심윤정
 심재철 심정희 안재호 양정석 여성오 염춘필 유세영 유인환 유재율 윤 석 윤상현 윤영조
 윤장환 윤지용 음종완 이기훈 이동균 이동주 이동희 이성수 이영주 이정근 이종락 이종혁
 이준우 이지은 이진수 이치현 이현태 이호걸 이환재 임상표 장광열 장귀연 전만성 전명산
 정경원 정덕수 정민영 정우상 정은영 정은희 정인경 정재관 정지윤 조미라 조우준 조옥중
 조은경 조장천 진재선 최광일 최동호 최봉규 최상준 최성훈 최세정 최연지 최영도 최정남
 최종호 최주연 최준규 하정옥 한경석 한상우 한상호 허 영 허영숙 허은경 허희정 홍종욱

<인천·경기>

강남구 강태정 강현정 고광완 고운상 김 혁 김남수 김대현 김동수 김미경 김민규 김백준
 김삼열 김상민 김상섭 김성아 김성은 김소영 김승욱 김승환 김영성 김영임 김영주 김영철

김용훈 김윤정 김재훈 김정아 김정은 김지송 김진규 김초환 김태구 김태균 김태영 김한영
 김현직 김현삼 김현정 김형도 김홍원 김황용 김효길 남문우 노세득 류경호 류준범 류홍빈
 박문옥 박상우 박상준 박상현 박선봉 박영훈 박우옥 박인애 박재현 박정용 박정호 박지영
 박지영 박진용 박하영 배종신 백승현 백은정 서광일 서정환 소영로 손 철 손병문 손삼기
 손정원 송인호 송일환 신선희 신윤관 신은영 심규석 심이섭 안미정 안성진 안재원 안형진
 양규원 양동규 양승일 양희순 어익선 오선경 오진숙 오희경 윤경수 윤정민 윤호숙 윤희중
 이강일 이경원 이경희 이근석 이기노 이동열 이미정 이석호 이성희 이순주 이영미 이영은
 이윤주 이은영 이장수 이점식 이정아 이종명 이종일 이철수 이항영 이혁의 이혜숙 이희배
 임은석 임희호 장경희 장인영 전 옥 전민정 전병렬 전선영 전해영 전해진 정민섭 정연철
 조성용 조송자 조윤정 조현복 조현재 지동민 진춘환 채희현 최문수 최문용 최애란 최연희
 최오진 최은영 하승민 한재원 한찬석 한호연 호순여 홍성희 홍은선 황금춘 황용운 황종덕

<대전 · 충청>

권상희 김례식 김미숙 김용주 김정식 김주영 김진강 김태호 남지연 남태규 박보경 박한규
 박형호 배상일 서동호 설동식 성우현 송재봉 신시연 신현수 심정훈 우은정 유원숙 윤용범
 이선영 이성광 이은규 이정아 조민제 조철우 진현정 최명녀 황선용

<강 원>

강병대 강신곤 고혜원 공서애 권정숙 김은희 김정환 김정희 김종환 김현주 김현진 김형준
 김혜원 김홍규 노은주 노형철 박선영 박영순 방상옥 심명자 안범섭 안종호 윤미라 윤요왕
 윤호상 이영애 이윤정 이은경 이은정 이재욱 이정숙 이창수 임은정 장유정 장현실 정희영
 조영욱 채영숙 최두용 최영민 추재호 한민정 한배우 한은정 홍정희 황선이 황오성

<전 북>

고일풍 권 영 권병훈 김경석 김귀자 김금희 김기덕 김명중 김민아 김소열 김수현 김영욱
 김정기 김정란 김중섭 김중현 김주환 김학열 김한국 노미선 문만식 문상봉 박남희 박영애
 박재성 박재순 박지선 박호권 배영희 백학영 서미숙 원경준 유기만 유성권 유소연 유수만
 윤철수 이미영 이민영 이성진 이세우 이재현 이창석 이태신 이필국 임성희 임재은 임현호
 장성민 장지영 장혜경 정상덕 정재원 정준현 정현중 조성욱 조혜진 최두현 최면구 최성욱
 최순자 최인화 최재석 최정근 최정희 최주병 한하늘 황수영 황희숙

<대구 · 경북>

김명섭 김영범 김용철 박찬희 서장수 송선경 신 강 이진영 정훈용 최윤영 최진혁

<부산 · 경남>

강병만 강은경 강한교 고영상 공영옥 권병안 김광모 김성민 김수희 김윤석 김은신 김정훈
 김홍현 박경미 박형조 박효석 박효섭 배기홍 배중진 성세경 안하원 어용수 오영환 윤홍태
 이광영 이선이 이은주 이종호 장은영 전종철 정민규 정인자 정찬수 조정래 조혜리 조호영
 최우진 한기원 한은주

— 통신 참가자 —

강동일 강미경 강민영 강봉구 강선미 강성호 강영호 강우석 강원중 강윤환 강일남 강창윤
 강현주 강황배 고길섭 고대립 고동욱 고동필 고성봉 고영구 고용석 고유정 광진영 광해영
 구경래 구동연 구승희 권순원 권오진 권오택 권은경 권태호 권태호 권혁순 권효재 기재훈
 김 석 김 선 김강필 김건웅 김경남 김경만 김경아 김경화 김경환 김관우 김광국 김국상
 김규환 김기일 김기철 김나리 김나영 김나희 김남선 김남진 김대식 김대환 김동규 김동성

